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, 조사, 심의 등을 ‘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(기존 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’에서 명칭변경(‘25.1.1~))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,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근거 조항(법 제16조) 삭제에 따라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6조, 안 제19조)
- 나.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폐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약정, 보험자 선정 등을 「환경보건법」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(안 제10조의2)
- 다.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(안 제18조의2)
- 라.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설치 주체를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

하고 조사단 인력 구성 요건을 추가(안 제21조)

마.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을 확대(안 별표3, 안 별표4)

바.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요양생활수당에 대해 지급기한을 조정(안 별표5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환경책임보험의 운용·관리)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「환경보건법」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(이하 “환경보건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1.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
2.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환경책임보험 관련 환경오염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5.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·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
6.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
7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(이하 “손해

조사등”이라 한다)의 실시요구 및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

8. 법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제정의 관리·운영

9.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 (이하 “손해조사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손해조사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환경오염피해 구제 선지급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범위 및 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’란 「환경보건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중대성·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”를 “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”로, “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”를 “위원장이 지명한다”

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1. 위원회 사무기구의 부서장 및 조사관

3. 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제22조제1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지급을 중단하려”를 “지급중단 결정을 하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지급을 중단할”을 “지급중단 결정을 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급중단 결정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알려야 하며, 운영기관은 지체 없이 구제급여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25조”를 “법 제25조제5항”으로, “구제급여 지급·선지급의 신청 접수, 예비조사, 본조사, 지급 여부·피해등급 등의 결정·통지 및”을 “구제급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전단 중 “매년”을 “환경부장관에게,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”으로, “환경부장관

에게 제출하여”를 “제출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매년”을 “매년 환경부장관에게,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”으로, “환경부장관에게 제출”을 “제출”로 한다.

⑦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.

1.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업무
 2.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지원 업무
 3. 법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지원 업무
-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제33조”를 “(제33조제1항”으로, “업무”를 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위원회(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”로, “제1호”를 “제4호 및 제8호”로, “제1호의 사무는”을 “제8호의 사무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,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사항
6.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
8. 제10조의2제5호·제6호의 사항에 대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

별표 3 비고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배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보장을 받

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별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.

별표 4 보장 금액 중 “80억원”을 “100억원”으로, “100억원”을 “150억원”으로, “30억원”을 “50억원”으로, “50억원”을 “75억원”으로 한다.

별표 5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월 단위로 지급하고, 4등급 및 5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은 제2호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해화학물질 운반업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·갱신 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환경책임보험 보장금액에 관한 적용례)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·갱신 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

행 전에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
해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6조(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)</u> ① <u>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 <u>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 <u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u> <u>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u>⑤ 위원회는 심의·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, 단체, 공무원, 전문가, 피해자,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
⑥ 위원회는 심의·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기관,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, 전문가 등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⑦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⑧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(非違)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10조의2(환경책임보험의 운용·관리)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「환경보건법」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(이하 “환경보건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1.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
2.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환경책임보험 관련 환경오염 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5.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·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
6.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
7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(이하 “손해조사등”이라 한다)의 실시요구 및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
8. 법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구제계정의 관리·운영
9.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

제11조의2(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) ① (생략)

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(이하 “손해조사등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1조의2(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손해조사등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환경오염피해 구제 선

지급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범위 및 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’란 「환경보건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「환경분쟁

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중대성·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
<삭 제>

제19조(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
의 구성) ① 법 제24조제1항에
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
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
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
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
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
려하여 위촉한다.

1.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
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
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
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
사람

3.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

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
실무에 종사한 사람

4. 「보험업법」 제186조에 따
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5
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5.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
사한 사람

6.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손해
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사람

④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
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
있다.

제20조(심의회 운영) ① 심의회
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
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
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, 그
의장이 된다.

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
결한다.

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
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
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④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

<삭 제>

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심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1조(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(이하 “조사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,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

제21조(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-- 위원장이

이 위촉한다.

<신 설>

1. (생 략)

2.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사람

<신 설>

④ 환경부장관은 의학적 판단이
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
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
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
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사위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
원 선임 기준에 관하여는 제19
조제3항을 준용한다.

⑥ (생 략)

제22조(구제급여의 지급 제한) ①
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
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
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
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
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
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

지명한다.

1. 위원회 사무기구의 부서장
및 조사관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<삭 제>

3. 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 등
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전문가

④ 위원회는 -----

-----.

<삭 제>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구제급여의 지급 제한) ①
위원회는 -----
----- 지급중단
결정을 하려-----

촉구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3조(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

-----.

② 위원회는 -----

----- 지급중단 결정을 할
-----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 결정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알려야 하며, 운영기관은 지체 없이 구제급여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
사람

3.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
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
실무에 종사한 사람

4. 「보험업법」 제186조에 따
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
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5.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
사한 사람

6.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및 손
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사람

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
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
다.

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
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
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
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
로 의결한다.

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
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
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

의 안전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⑥ 심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⑦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.

⑧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3조(업무의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

제33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3. 법 제2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·선지급의 신청 접수, 예비조사, 본조사, 지급 여부·피해등급 등의 결정·통지 및 지급에 관한 업무

4.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업무

5. 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의 통지에 관한 업무

6. 법 제2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

7. 법 제30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업무

8.·9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<신설>

3. 법 제25조제5항-- 구제급여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8.·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.

1.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업무

2.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지원 업무

⑦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환경부장관(제3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

3. 법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지원 업무

⑧ -----

----- 환경부장관에게, 이 조 제7항에 따라
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----- 제출하여 ---
--.

⑨ -----

----- 매년 환경부장관에게, 이 조 제7항에 따라
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--- 제출-----
-----.

제3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(제33조제1항-----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위원회(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-----

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(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(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)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6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

2. ·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<신설>

-----제4호 및 제8호-----

-----제8호의 사무는 -----

-.

<삭제>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사항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6.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

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8. 제10조의2제5호 · 제6호의 사항에 대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13